

서울특별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

의안 번호	55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18년 8월 16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또는 우리시를 방문하는 외빈에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격려하고 국제우호증진에 기여하고자 함
- 나.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(제4조)에 의거 명예시민 수여대상자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수여대상자 : 총 23명(남 19명, 여 4명) ※세부명단 별첨

○ 국적별 : 18개국(※ 국가별 가나다순)

그리스	1	네팔	2	뉴질랜드	1	대만	2	러시아	1	루마니아	1
몽골	1	미국	4	아랍에미리트	1	알제리	1	영국	1	요르단	1
인도	1	중국	1	조지아	1	탄자니아	1	파키스탄	1	필리핀	1

나. 추진경과

- 2018. 7. 2 ~ 7.27 명예시민 추천공고 및 접수 (총20개국 30명)
- 2018. 7.30 ~ 8. 8 공적·거주기간 등 자료 검토 및 보완 요청
- 2018. 8. 10 2018 명예시민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(추천자 30명 중 23명 선정)

다. 향후일정(안)

- 2018. 11. 15. 「2018 명예시민의 날」 기념식개최 및 수여

라. 관련근거

1) 수여대상 : 「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」 제2조 제1항

서울특별시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총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외국인 중 시정에 공로가 현저하고 서울특별시민과 거주 외국인에게 귀감이 되는 자 또는 서울특별시를 방문하는 외빈 및 현지 외국인 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음

2) 수여대상자 결정 : 「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」 제4조 제1항

명예시민증 수여대상은 공공단체의 장 등으로부터 추천된 자 중에서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

3) 서울시의회 동의 : 「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」 제4조 제2항

시장은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해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려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. 다만, 긴급한 사유 발생 시 시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음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※ 작성자 : 국제교류담당관 중국팀 이현음 (☎ 2133-5267)